

## 2 |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

- ❖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'국민주택등'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(분양)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에 의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우선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

### 가.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우선 대상자
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(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)

※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(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).

#### ☞ 용어의 정의(주택법 제2조)

- ① 국민주택등 :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
- ② 국민주택 :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(戶)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.
- ③ 민영주택 :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

#### ☞ 관련 법규정(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)

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(제12호부터 제14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.

18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

## 나.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절차

### 개요

- ① 시·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
- ② 시·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
- ③ 시·군·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주택공급신청 접수
- ④ 시·도지사가 배점기준표(무주택기간 등)를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
- ⑤ 시·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 대상자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안내
- ⑥ 대상자가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

### 1)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

#### ○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

- 시·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·군·구에 통보

#### ○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

- 시·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

### 2)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

#### ○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

- 시·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%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,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

#### ○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

- 시·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

### 3) 신청접수

- 시·군·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, 위치,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다문화가족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
  -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가 결정
    - \*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
- 구비서류
  - 알선 신청서(붙임 3) 1부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붙임 4) 1부
  - 무주택 입증서류 : 현거주지(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)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
    - \*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·도지사는 우선 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가능
    - \*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
  - 가족관계증명서
  - 주민등록등본
  - 국적취득 확인 서류(주민등록증 사본)

### 4) 공급알선

-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
  - 시·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
-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
  - 시·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조치

## 다.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및 전산검색

### 1) 우선순위 결정

- 붙임 “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”(붙임 2)에 의거,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
- 시·군·구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·도에서 취합하여 우선순위부를 작성·관리

### 2)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

- 시·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주택전산자료 검색 요청 가능
- 요청은 붙임 1 〈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방법〉 참고
  - ※ 검색의뢰 : 시·도 → 국토교통부

## 붙임 1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

### □ 공문서 표기방법

-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뢰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

검색대상	검색의뢰 인원				검색 목적	관련 근거
	계	본인	배우자	가족		
○○아파트 당첨자	150	30	20	100	입주자 선정	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

- ※ 관련 근거는 감사원법·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
- ※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

### □ 자료작성 방법

- TXT 파일로만 작성(엑셀, 한글,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)

#### ○ 작성방법

-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
-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
- 일련번호 : 6자리
  -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 : 000000
  -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 : 111111
  - 배우자 : 222222
  - 배우자 외 세대원 : 333333
- 구분자 : 당첨자는 “+”로 세대원은 “-”로 구분하여 입력
- 주민등록번호 : “-”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
- 이름 :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
- 입력번호, 구분자, 주민등록번호,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 키로 구분

※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

## ○ 작성 예

- ○○아파트 청약신청자(배우자가 있는 경우)

• 111111 + 1234567891234홍길동<sup>Enter</sup>

• 222222 - 5678913214586한마음

• 333333 - 4567860531348최진희

- ○○아파트 청약신청자(배우자가 없는 경우)

• 000000 + 1234567891234홍길동<sup>Enter</sup>

• 333333 - 4567860531348최진희

※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

※ 박스(표, 선그리기, 표 감추기 등)로 처리하지 말 것

## □ 유의사항

○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

○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

**붙임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**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 고 (구비서류)
		기준	점수	
무주택 기간	30	10년 이상	30	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 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*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(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) *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
		7년 이상~10년 미만	25	
		5년 이상~7년 미만	20	
		5년 미만	15	
배우자와 혼인기간	20	9년 이상	20	* 혼인기간 :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기간 * 가족관계증명서
		7년 이상~9년 미만	15	
		5년 이상~7년 미만	10	
		3년 이상~5년 미만	5	
세대원 구성	20	6인 이상	20	* 세대주 포함, 동거인 제외 * 세대원 :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* 주민등록등본
		5인	15	
		4인	10	
		3인 이하	5	
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	20	10년 이상	20	*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 해당 시·도 (현재 주민등록 기준)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* 주민등록등본
		5년 이상~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~5년 미만	10	
		1년 미만	5	
국적취득 여부	10	국적취득	10	* 국적취득 : 세대주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* 주민등록증

※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“배점 기준표”를 작성, 사용할 수 있음
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,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우선함





**붙임 4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안)**

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안)**

본 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○○○○(지자체명)이 동의인(본인)에게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'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22조 및 '개인정보 보호법' 제15조, 제17조 2항, 제22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.

이에 본인은 ○○○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고 지 내 용	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자 : 여성가족부, ○○○○(지자체명),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,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(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업무의 위임·위탁기관을 포함),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기관 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입주자격 심사 및 계약 안내 3. 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[기본항목]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정보(이름, 가족사항)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,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,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(민감정보(건강정보)), 주민등록등(초)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(의료)보험증,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, 주택소유정보,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, 장애인증명, 차상위(자활, 장애인, 한부모, 본인 부담경감대상, 우선돌봄) 증명 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[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] 6개월, [입주예정자] 5년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(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)	
동 의 사 항	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	[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[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	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(건강정보)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	[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[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	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 (세대원의 정보 열람·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 부담함)	[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[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서약자(동의자) 성 명 :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	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시·도지사 귀하		

**붙임 5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**

순위	성명	주민 등록 번호	결혼이민자 (국적취득자) 성명	무주택 기간	배우자와 혼인기간	세대원수 (세대주포함)	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	국적 취득 여부	종합 점수	연 락 처 (전화번호)	비고

제12장 기타 참고자료

※ 무주택기간 :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(연속된 기간)  
 ※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6조에 의함